

‘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에 관한 Q&A

※ 본 Q&A의 지방 입국관리국에는 지국 및 출장소가 포함됩니다.

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입관법’으로 기재하며, ‘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은 ‘전자신고시스템’으로 기재합니다.

~기본편(제도편)~

Q1 : ‘전자신고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A : ‘전자신고시스템’은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 수속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신고 및 신고 상황을 자택에서나 오피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에 따른 신고란 무엇인가요?

A : 입관법이 개정(2012년 7월 9일 시행)되면서, 법무대신이 중장기 체류자에 관한 필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중장기 체류자 본인은 그 체류자격에 맞게 소속기관 또는 신분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무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하게 되었습니다(입관법 제19조 16).

또,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소속기관은 중장기 체류자의 수용 상황을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게 되었습니다(입관법 제19조 17).

Q3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와 입관법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는 중장기 체류자인 외국인 분들이 그 체류자격에 맞게 소속기관 또는 신분관계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도중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또, 입관법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는 중장기 체류자가 소속된 기관이 중장기 체류자의 수용 상황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입니다.

Q4 : ‘중장기 체류자’란 누구를 뜻하나요?

A : 입관법상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①에서 ⑥까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①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② ‘단기체류’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④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아동(亞東)관계협회 일본 사무소(타이페이 주일경제문화대표처 등)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 직원 또는 그

가족

⑤ 특별영주자 분

⑥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

Q5 : 입관법 제19조 17에 규정된 '소속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 입관법 제19조 17에 규정된 소속기관이란 '교수',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홍행', '기능'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일본의 공적·사적 기관을 말합니다(다만, 고용대책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고용 상황을 신고해야 할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Q6 : 입관법 제19조 16에 규정된 신고가 필요한 체류자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아래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교수',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교육', '기업 내 전근', '기능 실습', '유학', '연수', '연구',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홍행', '기능', '가족체류(※)', '특정활동(다)(※)',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고 이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의 첫 화면에도 '신고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 일람'을 게재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Q7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에 대하여,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 아래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기술', '유학' 등 소속기관의 존재가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분의 경우, 그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술', '종교' 및 '보도'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존재가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인 배우자 등' 등의 신분·지위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분은, 소속기관의 변경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용계약 등 계약 상대방인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소속기관 내에서 전근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류' 및 '특정활동(다)'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함)이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에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은 이혼 등을 한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8 : 성명, 국적 등의 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이사를 한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 변경들에 관해서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주지를 새로 정한 경우나 거주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거지의 시쿠초손 창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9 :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에 대하여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상세한 내용은 <http://www.immi-moj.go.jp/topics/todokede.pdf>를 참조해 주십시오.)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신고에 관해서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입국관리국에 문서를 제출해 신고를 할 경우 대리인 제출,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우송할 경우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 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 '교수',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교육', '기업 내 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4.html

체류자격 : '연구',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홍행', '기능'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tml

※ 배우자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6.html

Q10 :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벌칙 또는 불이익처분이 있나요?

A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에 대하여, 소속기관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관한 신고가 필요한 중장기 체류자가 그 신고를 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신고를 하여 징역에 처해진 경우는 퇴거강제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Q11 : 소속기관 신고에 대하여, 고용처를 퇴직 또는 해고되어 무직이 된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되나요?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입관법 제19조 16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가 고용처를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자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거주지, 체류카드 번호, 퇴직 또는 해고일 및 고용처 명칭 및 소재지를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시거나 지방 입국관리국에 제출 또는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 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Q12 : 고용처 변경 신고(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새 고용처에서 하게 되는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가요? 취로자격증명서 제도는 종래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A : 신고하신 새 소속기관에서의 활동내용을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취로자격증명서 제도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므로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면 새 고용처에서의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3 :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소속한 회사

가 합병으로 인해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합병을 하더라도 명칭·소재지 등에 변경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가요?

A : 취로자격 중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등 소속기관(회사)의 존재가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분의 경우 소속하는 회사가 합병하여 회사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등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소속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명칭·소재지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14 :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인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A :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인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자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거주지, 체류카드 번호 및 이혼한 날짜를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시거나, 지방 입국관리국에 제출 또는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 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Q15 : 새로 혼인을 한 경우나, 재혼한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가요?

A :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 한합니다.

Q16 : 회사, 교육기관 등 외국인을 받아들인 기관(소속기관)은 받아들인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A : 외국인을 받아들인 기업, 교육기관 등의 소속기관에서 받아들인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공정한 체류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17 :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어떤 정보를 신고하게 되는가요?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신고 협조를 바라는 소속기관은 ‘교수’,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홍행’, ‘기능’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기관 중 고용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 상황을 신고해야 할 사업주를 제외한 기관입니다. 신고 사항은 수용 상황, 받아들인 중장기 체류자의 성명 등입니

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으나, 소속된 외국인 분들의 체류기간 갱신 등 허가신청 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8 : 소속기관이 받아들인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갱신 등의 허가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 소속기관이 하는 신고는 노력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의해 그 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의 신청이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소속기관이 받아들인 외국인의 체류상황이 미리 파악되므로 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19 : 이적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이전 소속기관에서의 이탈 또는 소속기관과의 계약 종료에 관한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 양쪽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적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동반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탈 또는 계약 종료의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를 하기 전에 한번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에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 수속>

Q20 : 중장기 체류자 본인이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를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친족이나 고용처 직원 등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중장기 체류자 및 소속기관 담당자에 한합니다. 이에 더하여 '전자신고시스템'의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소속기관 담당자는 똑같이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중장기 체류자부터 의뢰를 받아 중장기 체류자 본인을 대신하여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따른 신고 중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에 관한 신고를 '전자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에 관한 Q&A

※ 본 Q&A의 지방 입국관리국에는 지국 및 출장소가 포함됩니다.

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입관법’으로 기재하며, ‘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은 ‘전자신고시스템’으로 기재합니다.

~시스템 조작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Q21 : 이용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A : ‘증장기 체류자용’과 ‘소속기관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증장기 체류자가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증장기 체류자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 증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소속기관의 담당자가 입관법 제19조 17의 신고를 할 경우 또는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증장기 체류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증장기 체류자 본인을 대신하여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조작 매뉴얼에 관해서는 ‘전자신고시스템’의 첫 화면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Q&A)’ 링크에서 본 Q&A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2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증장기 체류자와 소속기관의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3 : 이용료는 필요한가요?

A : 이용료는 필요 없습니다.

Q24 :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A : 24시간 365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이용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의 ‘연락사항’으로 알려 드립니다.

Q25 :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에서는 PDF 등 전자 데이터를 포함한 서면에 의한 신고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에 의한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의 창구에 지참하거나 또는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이용환경 등에 대하여>

Q26 : 이용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에 제한은 있나요?

A : Internet Explorer8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며, 다른 환경에서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Q27 : 일괄신고용 엑셀 파일의 버전에 제한은 있나요?

A : Microsoft Excel 2007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며, 다른 버전은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Q28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본 사이트의 보안증명서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용환경에 따라서는 '안전한 통신을 하기 위한 증명서'의 인스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정부인증기반(GPKI)에 의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인스톨 수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인증기반(GPKI)'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gpki.go.jp/apca/APCAself_install.pdf (증명서 인스톨 수순)

<http://www.gpki.go.jp> ('정부인증기반(GPKI)' 홈페이지)

Q29 :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 휴대폰 브라우저에는 화면이 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PC로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30 :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 중장기 체류자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 중국어(간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타갈로그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속기관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일본어 및 영어로 표시됩니다.

다만, 입력하실 때에는 중장기 체류자에 의한 신고, 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모두 성명 등 영문 입력항목을 제외해 일본어 입력에만 대응합니다.

Q31 : 영어로 입력할 수 있나요?

A : 일부(영문 성명 등)를 제외해 일본어로 입력해 주십시오.

<이용자 정보 등록 및 로그인에 대하여>

Q32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33 : 이용자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 : 중장기 체류자는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중장기 체류자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버튼을 클릭하여 중장기 체류자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 후 ‘인증 ID 발행’ 링크에서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해 주십시오. 또, 입력 시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체류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소속기관 담당자는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오나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해주십시오. 또, ‘전자신고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소속기관 등록용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 가지고 오십시오.

Q34 : 소속기관용의 이용자 정보 등록을 ‘전자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소속기관 담당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35 : 이용자 정보 등록을 사용했는데 등록을 못하는데요?

A : 자신의 체류자격이 신고대상 체류자격인지 확인해 주십시오.(기본편(제도편)의 Q6을 참조 바랍니다.)

이용자 정보 등록을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36 : 오늘 새로 체류카드를 교부 받았는데 이 체류카드 번호로 이용자 정보 등록을 못하는데요?

A : 새로 체류카드가 교부된 당일은 이용자 정보 등록을 못합니다. 죄송하오나 다음날 이후에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해주십시오.

Q37 : 새로 체류카드를 교부 받았는데 이용자 정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 이용자 정보 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되어있는 인증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해 주십시오.

신고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에서 입력하는 신고 대상자의 중장기 체류자의 신분사항은 최신 체류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또, 중장기 체류자 경우 새로운 체류 허가(체류기간 갱신 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를 받지 않은 채 기존 체류기한이 경과되면 인증 ID의 유효기한이 넘어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Q44를 보시기 바랍니다).

Q38 :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하면 등록 완료메일이 온다던데, 등록 완료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중장기 체류자는 등록이 완료되고 몇분 후에 등록 완료 메일이 도착합니다. 소속기관 관계자에게는 등록된 다음날에 등록 완료 메일이 도착합니다. 등록 완료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39 : 이미 등록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없으므로, 이용자 정보 등록 시에 등록된 정보를 자신이 직접 보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증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십시오.

Q40 : 등록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상에서는 이용자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신분사항(국적·지역, 성명, 성별, 생년월일)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변경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로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의 거주지 이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십시오. 또, 비밀번호와 메일주소는 ‘전자신고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41 : 이미 등록된 이용자 정보를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이용자 정보 등록의 말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체류카드가 실효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전자신고시스템’의 이용자 정보는 무효가 됩니다.

<인증 ID>

Q42 : 인증 ID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A : 인증 ID는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자신이 직접 파악 및 관리해 주십시오. 인증 ID는 반각 영숫자 기호로 6자 이상 20자 이내로 설정해 주십시오. 대문자, 소문자는 다른 글자로 인식하므로 입력 시에 유의해 주십시오. 또, 이미 같은 인증 ID를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3 : 혼자서 인증 ID를 여러개 취득할 수 있나요?

A : 이미 이용자 정보 등록을 마친 분은 다른 이용자 정보 등록은 못하므로 한 분으로 유효한 인증 ID를 여러개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Q44 : 인증 ID에 유효기한은 있나요? 또, 유효기한을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중장기 체류자 경우 체류기한이 인증 ID의 유효기한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갱신 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으로 체류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 체류기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관계자 경우 마지막에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한 후 1년이 경과되면 인증 ID의 유효기한이 넘어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 못하게 됩니다. 유효기한이 경과되어 인증 ID가 실효된 경우는 최종하오나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인증 ID를 다시 취득해 주십시오.

Q45 : 인증 ID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한번 설정한 인증 ID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46 : 인증 ID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중장기 체류자는 로그인 화면의 ‘인증 ID·비밀번호 재통지’에서 체류카드 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된 메일주소에 인증 ID를 알리는 통지 메일이 도착합니다. 또, 이용자 정보를 입력할 때 입력화면에 새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비밀번호 이외의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소속기관 관계자는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인증 ID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종하오나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인증 ID를 확인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Q47 :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A : 비밀번호는 자신이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자신이 직접 파악 및 관리해 주십시오.

비밀번호는 반각 영문, 반각 숫자, 반각 기호 3종류를 혼재시켜 8자 이상 32자 이내로 설정해 주십시오. 대문자, 소문자는 다른 글자로 인식하므로 입력 시에 유의해 주십시오.

또, 인증 ID를 포함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Q48 : 비밀번호에 유효기한은 있나요? 또, 비밀번호의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비밀번호를 등록한 날 또는 비밀번호를 마지막에 변경한 날부터 1년간이 유효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로그인하지 못하게 되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 체류자 경우 ‘인증 ID·비밀번호 재통지’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해 주십시오. 이 경우 인증 ID는 이메일로 통지되나 비밀번호는 보안상 관계로 이메일 통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소속기관 관계자 경우 유효기한이 지나면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새 비밀

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오나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해 주십시오.

또, 중장기 체류자도 소속기관 관계자도 로그인 후에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비밀번호 변경은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관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49 :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중장기 체류자도 소속기관 관계자도 로그인한 후에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50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등록되어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기능은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체류자는 로그인 화면의 ‘인증 ID·비밀번호 재통지’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관계자는 ‘전자신고시스템’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오나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해 주십시오.

Q 51 : 타인에게 인증 ID, 비밀 번호가 누출됐어요. 부정 이용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 :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이용자 정보를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52 :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입력해서 잠금 기능이 작동되었는데 어떻게 풀면 되나요?

A : 하루 경과 후에 잠금이 해제되므로 다음날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장기 체류자가 긴급할 때에는 로그인 화면의 ‘인증 ID·비밀번호 재통지’에서 새 비밀번호를 등록하시면 즉시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관계자는 로그인하기 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음날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Q 53 : 메일주소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나요?

A : 이용자 정보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을 한 경우 ‘전자신고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용 이메일을 송신하므로, 반드시 유효한 메일주소(Q54참조)를 등록해 주십시오.

- Q54 : 메일주소는 무료 메일이나 휴대폰의 메일주소를 등록해도 되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등록하신 메일주소에 이메일이 송신되므로, 반드시 확인 가능한 메일주소를 등록해 주십시오. 무료 메일이나 휴대폰의 메일주소는 바르게 표시 못할 수 있으므로, PC의 메일주소를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무료 메일이나 휴대폰의 메일주소를 등록하실 경우는 '@ens-immi.moj.go.jp' 도메인을 수신 가능한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Q55 : 이미 등록된 메일주소를 바꾸었는데 수속을 할 필요가 있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메일주소 변경 화면에서 새로운 메일주소를 등록해 주십시오.
- Q56 : 이미 등록된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메일주소 변경 화면에서 새로운 메일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57 : 어떤 경우에 이메일이 송신되나요?
A : 아래와 같은 경우 등록된 메일주소에 이메일이 송신됩니다.
 - 이용자 정보 등록 시
 - 인증 ID 재통지 시
 - 메일주소 변경 시
 - 비밀번호 변경 시
 - 신고 정보 접수 시(정상 또는 에러)
 - 신고 정보 본등록 시(정상 또는 에러)(또, 본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내용의 이메일 송신으로 신고수속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에러 통지가 송신된 경우는 다시 신고해 주십시오.)
- Q58 :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메일에 답신을 할 수 있나요?
A :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메일에 답신 하실 수 없습니다(답신을 하셔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Q59 : 인증 ID, 비밀번호랑 메일주소를 몽땅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A : 죄송하오나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60 : 자신과 관련이 없는 메일이 도착했을 때에는?
A : 본인이 한 기억이 없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인증 ID 재발송이 있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신고시스템'의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분사항 입력>

Q61 : 국적·지역의 입력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A : 국적·지역란의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또, 국적·지역은 원칙적으로 영문 표기의 알파벳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62 : 거주지의 입력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A : 거주지란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알맞은 도도부현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한 도도부현에 존재하는 시쿠초손명이 표시되므로 알맞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이 완료되면 거주지란(‘선택’ 버튼의 오른쪽 옆)에 선택한 거주지가 표시됩니다. ‘초명 초메 번지 호’는 해당 텍스트 상자에 전각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Q63 : 신분사항을 입력했더니 ‘체류카드에 기재된 정보대로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에러가 표시되고 ‘!’ 마크가 떴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A : 확인이 필요한 곳에는 전부 ‘!’ 마크가 표시됩니다. ‘!’가 표시된 곳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므로, 다시 입력항목을 확인하고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해도 에러가 뜰 경우에는 ‘전자신고시스템’의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64 : 거주지 입력 시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A : 지원하는 문자 종류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수준은 JIS 제1수준, JIS 제2수준입니다.

Q65 : 성명 영문을 입력하는 란은, 이름을 입력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A :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순서로 입력해 주십시오. 만일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을 해도 에러가 나는 경우는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66 : 성명 입력 시 몇 번이나 에러가 나는데요.

A :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또, 반각 영문 대문자로 입력되므로 빈칸도 반각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Q67 : 이용자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에러가 나는데요.

A :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을 해도 에러가 나는 경우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

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신고 정보 등록 >

Q68 : 첨부서류는 필요하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때에는 서류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69 : 사유 발생 연월일에 과거일자 또는 미래일자 입력은 가능한가요?

A : 미래일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신고 사유가 발생한 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70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의 입력화면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항목 중 '실제 활동장소'란 무엇인가요?

A : 중장기 체류자가 신고한 소속기관 소재지와 중장기 체류자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장소가 다른 경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장소를 임의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예:소속기관은 본사의 명칭·소재지를 신고했으나 실제로 업무를 하는 장소는 본사가 아니라 영업소인 경우 등.

Q71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한 정보(신고 내용)를 확인할 수 있는가요?

A : '전자신고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고상황 참조 화면'에서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신고한 정보의 상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정보를 입력한 후에 표시되는 확인화면을 인쇄하거나 하드 카피를 하는 등 신고 내용을 자신이 직접 보관하셔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Q72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가요?

A : 로그인 후 '신고 상황 참조 화면'에서 과거에 신고한 이력, 신고 상황(등록 중, 등록 완료, 등록 에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황 표시 내용에 '등록 중'은 신고 정보의 시스템 등록 처리 중임을, '등록 완료'는 시스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또, '등록 에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고 정보에 무슨 에러가 발생하여 신고 정보의 시스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에러 내용을 확인하고 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

Q73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 한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력, 송신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바른 정보를 다시 입력한 후 다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같은 날에 완전히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신고한 경우 마지막에 한 신고 내용이

유효가 됩니다.

Q74 : 잘못 신고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또, 한번 신고를 한 후 신고를 취할 수 있나요?

A : 입력, 송신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바른 정보를 다시 입력한 후 다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신고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75 : 좀처럼 신고 완료 메일이 오지 않는데요.

A : 신고한 날부터 다음날 이후에 이메일이 송신됩니다. 3일 이상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죄송하오나 '전자신고시스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주십시오. 헬프데스크의 연락처는 '전자신고시스템' 첫 화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메일주소를 변경하신 경우 이용자 정보 변경 메뉴에서 메일주소의 변경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 '신고상황 참조 화면'에서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6 : 신고상황 참조 화면의 에러화면(서브화면) 등을 쉽게 인쇄하는 방법은 있나요?

A : 인쇄하고 싶은 화면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인쇄'를 선택 또는 'Ctrl' 키를 누르면서 'P' 키를 누르면 인쇄화면이 표시됩니다. 가로 방향 인쇄설정을 한 후 인쇄해 주십시오.

<일괄신고 양식 파일(소속기관 관계자만)>

Q77 : 일괄신고는 최대 몇 명분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 최대 300인분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일괄 신고를 해 주십시오.

Q78 : 입관법 제19조 16의 일괄신고 시에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A : 신고를 하는 중장기 체류자 자신도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 체류카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Q79 : 일괄신고에서 에러가 떴는데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접수에러가 뜬 경우에는 신고한 전원의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에러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상자의 에러를 수정해 다시 신고 등록을 해 주십시오.

또, 일괄파일을 등록한 다음 몇분 후에 이메일이 도착하므로 접수 에러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 등록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에러가 난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신고 등록을 실시해 주십시오.

<정보 관리>

Q 80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A : 입국관리국의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됩니다.

Q 81 : 보안대책 등 체류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에 사용자 인증 기능, 액세스 제어 기능, 사용자 계정 인증 기능, 증적 관리 기능, 시스템 감시 기능 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는 SSL 등을 사용해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또, 바이러스 대책,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Q 82 : 에러 메시지의 의미와 대응방법을 알고 싶는데요?

A : 조작 매뉴얼의 별책으로 에러 메시지 일람을 첨부했습니다. 이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Q 83 : 신뢰할 수 없는 화면이동의 에러가 표시되는데요.

A : 입력하는 도중에 브라우저의 '돌아가기' 버튼이나 자판의 'Back Space' 키를 누르면 신뢰할 수 없는 화면이동으로 인식되어 로그아웃되므로 이 버튼들을 누르지 마십시오.